

국민 법감정 고려 범죄 규정

간통죄 합헌 결정 의미

헌법재판소가 형법상의 간통죄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 국민의 법감정상 '성적 자유'의 문제가 아직은 개인의 도덕적 판단에만 맡겨질 단계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즉 국가가 이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으면 성도덕이나 일부일처제를 유지하기 힘들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추구권마저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다.

예초 위헌론자들은 현실적으로 여자는 경제적 능력이 약해 남편과의 이혼을 무릅쓰고 고소

체의 자유규정에 어긋난다는 논리로 전개됐다.

헌법재판소의 변정수 재판관 등 4명의 재판관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법 적용의 결과가 달라지고 특히 경제적 약자인 여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간통죄를 친고죄로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친고죄로 된 다른 범죄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인만큼 이를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간통죄 규정이 개인의 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는 생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헌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현재 형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간통죄의 폐지를 검토중인 법무부의 입장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과정에서는 간통죄 합헌론을 견지하면서도 형법개정 문제에서는 간통죄 폐지에 기운듯한 입장을 취해왔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위헌론을 편 한병채·이시윤·김양균 재판관은 민사상의 이혼이나 위자료를 무는 것뿐 아니라 형사처벌, 그것도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한 것은 현대적

“일부일처제 · 행복추구권 보장에 필요” 형사처벌 여부는 입법권자에 넘겨

하기가 어려워 간통죄가 사실상 남녀 사이에 불평등을 가져온다고 지적해 왔다. 또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참고 용서하는 선량한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복수심이 많은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될 뿐 아니라 이 죄가 위자료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간통행위를 한 사람이라도 재력이 있는 사람은 처벌받지 않고 재력이 없는 사람만 처벌받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위헌론자들은 주장했다.

법률적으로도 간통죄는 애정이 없는 경우에도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제함으로써 성적인 면에서 개인의 결정권에 국가가 부당하게 간섭해 헌법상의 인간 존엄·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신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혼외자녀문제, 가정의 파괴 등으로 빚어지는 사회적 해악을 예방해줌으로써 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참다운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준다고까지 해석하고 있다.

간통죄 규정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현재의 민법에 규정된 일부일처제나 부부간의 동거·상호부양의무 규정 등도 위헌이라고 해석돼야 한다는 반론도 덧붙였다.

조규광·김문희 재판관은 좀더 현실적인 측면에서 합헌론을 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고유의 '정절관념'이 전통윤리로 뿌리깊게 자리잡혀 있어 간통죄 처벌이

법감각을 잃은 것인만큼 간통죄를 없애거나 최소한 징역형만을 둔 규정은 고쳐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이 부분은 입법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합헌론을 편 조규광·김문희 재판관도 형사처벌 여부는 입법권자의 의지에 속하는 문제라고 밝혀 재판관 9명중 과반수인 5명이 합헌결정과는 별개로 정부에 의한 간통죄 폐지의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보충의견을 편 조·김 재판관이 밝혔듯이 우리 국민이 남녀의 정절관념을 엄연히 도덕적 기준으로 여기고 있는 상태에서 법무부의 간통죄 폐지입장은 앞으로도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김이택 기자〉